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74 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김성주·강선우·고영인

김회재 · 남인순 · 송영길

송옥주・정필모・최종윤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.

또한,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,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아울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·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심신미약·상실자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상자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또한, 공적자료만으로 소득·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대상자 조사·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심신미약·심신상실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 권 발급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시장 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.
- 나.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·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9조제4항)
- 다.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·재산 수준이 일정기 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

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2항)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에서"를 "제4항까지에서"로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 및 발급 유형을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·정 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·재산 수준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	제9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
신청) ①・② (생 략)	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
	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
	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
	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
	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
	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
	<u>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</u>
	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<u>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</u>
	한 법인・단체・시설・기관 등
	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
	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
	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
	<u>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1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)	제11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 <u>1</u>
	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
	발급 여부 및 발급 유형을 결

<u>②</u>·<u>③</u> (생 략)

④ 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에서</u>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
은 자료·정보의 전부 또는 일
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
의 소득·재산 수준이 보건복
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
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
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
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
<u>다.</u>
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과 같음)
<u>⑤</u> <u>제4항까지에서</u>